

#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 [급여제공 이용계약]

계약은 수급자[보호자]와 계약을 하고, 수급자의 인지기능저하로 수급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.

### [계약 기간]

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1. 기관과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2.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.
3.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
### [계약목적]

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

### [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]

1.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%를 받고, 나머지 85%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.
2.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% 청구하고,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으로 6%, 9%를 청구하고,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.
3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4. 제12조 사항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  
「별첨1」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[2024. 01. 01] 참조
5.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### [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]

1. 신원 인수인의 권리
  -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
  -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  - ③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  -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 -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  -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2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③ 개인정보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수급자[보호자]는 방문요양·방문목욕 급여제공 전 수급자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[보호자]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 단,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·방문목욕 급여제공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[보호자]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.
-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⑥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## 3. 이용자의 책임이행

급여제공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, 수급자[보호자]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-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.
- ③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.

## 4. 수급자 구비서류

수급자[보호자]는 방문요양[방문목욕]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-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

## [계약의 해제]

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2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
4.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(보호자)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6. 폭행, 폭언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7.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
8.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
## [기타]

기타 사항은 민·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.

「별첨1」

##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01.01.)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| 분류   | 년도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월한도액 | 2023년도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
|      | 2024년도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
|      | 증가액    | 9.81%     | 10.63%    | 2.72%     | 2.73%     | 2.72%     |

○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(원)

| 방문당시간 | 23년 수가 | 23년 본인부담 | 24년 수가 | 24년본인부담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30분   | 16,190 | 2,429    | 16,630 | 2,495   |
| 60분   | 23,480 | 3,522    | 24,120 | 3,618   |
| 90분   | 31,650 | 4,748    | 32,510 | 4,877   |
| 120분  | 40,280 | 6,042    | 41,380 | 6,207   |
| 150분  | 46,970 | 7,046    | 48,250 | 7,238   |
| 180분  | 52,880 | 7,932    | 54,320 | 8,148   |
| 210분  | 58,930 | 8,840    | 60,530 | 9,080   |
| 240분  | 65,000 | 9,750    | 66,770 | 10,016  |

○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(원)

| 방문당시간        | 23년 수가 | 23년본인부담 | 24년 수가 | 24년본인부담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차량이용(차량내 목욕) | 82,160 | 12,324  | 84,670 | 12,701  |
| 차량이용(가정내 목욕) | 74,070 | 11,110  | 76,340 | 11,451  |
| 차량미이용        | 46,250 | 6,937   | 47,670 | 7,151   |

○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9%, 6% |